

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기획예산과)

의안번호	제154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3. 08. 29.)
의 안 명	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변경이유

가.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내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 등)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
- 2) 설치목적 :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
- 3) 설치연도 : 1995. 3. 6.

나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1) 기금사업의 목표

- 구, 동, 보건소,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, 재건축, 이전신

축 포함)에 필요한 경비 지원

-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, 기본조사 설계, 실시설계,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

2)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

- 공용청사 신·증축(성북동, 돈암1동, 길음2동, 정릉2·3동) : 10,446,798천원
- 공공시설 건립(보문동, 길음동) : 2,200,000천원

다. 2023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

1) 기금변경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	변경예산	증감액
기금규모(수입·지출)	107,729,961	133,255,138	25,525,177

2)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수입계획변경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07,729,961	133,255,138	25,525,177	
예치금회수	91,069,961	91,069,961	-	
기타회계 전입금	14,000,000	37,985,177	23,985,177	(증)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증가
이자수입	2,660,000	4,200,000	1,540,000	(증)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 증가 예상분

○ 지출계획변경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(B-A)	증감내용
계	107,729,961	133,255,138	25,525,177	
사무관리비	54,840	54,840	-	
시설비	12,467,798	12,467,798	-	
자산취득비	25,000	25,000	-	
기타자본이전	100,000	100,000	-	
예치금	95,082,323	120,607,500	25,525,177	(증)연도말 기금조성액

3)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조 성 액	사 용 액	2023년말 조성액(잔액)
133,255,138	12,647,638	120,607,500
· 예치금 : 91,069,961 · 전입금 : 37,985,177 · 이 자 : 4,200,000	· 위원회 운영 : 840 · 공용청사 : 10,446,798 · 공공시설 : 2,200,000	2024년도 이월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4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,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기정 예산 1,077억2,996만원보다 23.69%인 255억2,617만원 증액된 1,332억 5,513만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.

○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13조²⁾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용도는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13조(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)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, 공공체육시설, 주민편익시설 등(이하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5.14, 2020.12.31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20.5.14.)

1. 일반회계 전입금 (구세 및 세외수입의 1% 이상) (개정 2017.12.28, 2020.5.14, 2020.12.31.)

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, 재건축 포함) 경비 및 부대경비,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및 부지매입비, 기금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 등임.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2. 교부금 및 보조금 (개정 2020.5.14.)

3. 삭제 (2017.12.28.)

4. 기금운용 수익금 (개정 2020.5.14.)

5. 그 밖의 수입금 (개정 2020.5.14.)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5.14.)

1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(신·증·개축, 재건축 포함) 경비
(개정 2020.5.14.)

2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(개정 2020.5.14.)

3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(신설 2020.5.14.)

4.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(신설 2020.5.14.)

5. 기금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 (신설 2020.5.14.)